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감사 -

2023.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발전기금 모집 부적정	(시정, 기관경고)	4
2.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	(주의)	7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0
4. 의료원 목적 외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13
5.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18
6.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1
7.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통보)	24
8. 계약직원 정규직 임용 부적정	(주의, 기관경고)	26
9.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8
10. 해외여행 운영 부적정	(주의)	31
11. 소방시설공사 준공검사 관련	(주의)	33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기관경고)

제 목 △△△△ 모집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 ☆☆☆☆☆에서는 △△△△ 모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김천의료원정관」 제5조에서는 의료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경북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의료원에서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사전절차 없이 추진하였으며, 내부 임·직원과 외부인들에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하여 0000.00.00. 「△△△△ 모집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0000.00.00.)하면서 의료원 게시판에 0000.00.00. 내부 임·직원에게 모집을 홍보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전기금 모집을 홍보하여, 내·외부인들에게 00,000,000원(이자포함)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모집하고,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정관」에서 정한 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에 모집된 기부금품 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여 주시고, 기부금품 모집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사안에 대해 ○○○○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② 김천의료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 ●●●에서는 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김천의료원정관」 제28조 제3항에서는 의료원의 부 단위 이상 직제는 <별표1> 기구표와 같이하고 직종별·직급별 정원은 <별표2> 정원표와 같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2> 정원표에서는 간호직 3급 정원은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 「직제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 각과에는 과장 1인을 두되 의사로 보하고, 간호부와 약제부에는 부장 1인을 두되 간호부장은 간호직 3급 내지 4급으로 보하고, 약제부장은 약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 7조 4항에서는 간호부장 밑에는 과장, 수간호사를 두고 과장은 4급 내지 5급으로 보하고 수간호사는 5급 내지 6급 직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의 직종은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관리직, 운영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급과 직위는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간호직의 경우 간호부장만이 3급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규정」 제43조 제5항에 따르면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의료원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7.1.1.시행) 제4조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의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 인원만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간호부장에 보할 수 있는 3~4급 복수정원에 간호 4급을 임용한 경우 간호 3급과 간호 4급의 복수정원은 간호 4급 정원으로 운용되어 간호 3급을 결원으로 보아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의료원에서는 0000.00.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3급 내지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간호부장 직위에 ☆☆☆ 간호부장이 임용되어 있어, 4급 간호부장으로 3·4급 복수정원을 4급으로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정관 정원표에 3급 정원이 1명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원 「인사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간호부장 직위를 보할 수도 없으며 간호 3급으로 보할 수 없는 ★★★★★팀장 ●●●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시켜 의료원 「인사규정」을 형해화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와 ●●●는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 ◇◇◇◇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지방의료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로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 ~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같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경우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할 때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지출하여야 하고,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 임·직원 등 의례적 선물로서 집행가능 대상에게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는 0000 ~ 0000년 기간 동안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50만원 이하로 0000년에는 00건, 00,000,000원을 집행하는 등 0000 ~ 0000년 기간 동안 합계금액 00,000,000원을 50만원 이하로 000회 나누어 집행하였고, 명절 선물을 지급할 수 없는 유관 기관장 등 외부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회계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새로이 제정 및 시행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원 목적 외 사업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 ○○○○○○에서는 의료원 ◇◇◇◇회를 추진하면서 ◇◇◇◇ 행사장에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홍보부스 설치비 및 학술대회 책자의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하였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별첨]참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김천의료원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정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원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사업, 시설임대사업, 주차장 운영사업, 식당운영사업,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수익사업만 수행이 가능하고, 홍보부스 설치 및 책자 홍보란 판매 등 그 외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인정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며, 홍보부스 설치 및 책자 홍보란 판매 등 사업자로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의료원에서는 0000.00.00. 개원 100주년 ◇◇◇◇ 개최 등 3건에 대하여 행사장 홍보부스 설치비 및 학술대회 책자 내 광고 게재에 대한 00,000천원의 금원을 의료기기·의약품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의료원 수익금으로 처리하면서, 「지방의료원법」 및 「정관」에서 정한 사업 이 외의 사업으로서 이사회에서 인정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용 계산서를 발부하여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신고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규정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관련자 ☆☆☆와 ○○○는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 ★★★에서는 의료원 직원들의 인사와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원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1항은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인사위원장은 진료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 제2항은 내부위원은 처장 및 기타 의료원장이 인정 하는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의료원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기타 의료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인사위원회 인원 중 내·외부위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득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명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의료원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0000.00.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간호부장으로 발령도 받지 않은 ○○○(실제 간호부

장 직무대리 발령일 0000.00.00.)를 인사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에서는 ‘○○○ ★★ ☆☆ ●● ◇◇ ◆◆◆◆ 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와 관련하여 0000.00.00. 여성기업인 ‘◎◎◎◎◎◎’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등 한시적 특례²⁾가 적용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2021. 6.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에 대해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3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여성기업을 사유로 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 입찰을 통해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적격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김천의료원에서는 한시적 특례로 인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 ★★☆☆ ●● ◇◇ ◆◆◆◆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여성기업인 ‘○○○○○○○○’와 부적정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주의)**
- ② 관련자 ○○○을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에서는 자체 「복무규정」의 제4절 휴일 및 휴가 규정 제22조(휴일)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국경일, 설날 등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2022. 6.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의료원에서는 법령에서 정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공휴일 외에 이와 유사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김천의료원에서는 자체 「복무규정」의 제4절 휴일 및 휴가 규정

제22조(휴일)에 직원의 유급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한 휴일’ 외에 ‘개원 기념일, 김천의료원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부적정한 유급휴일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 결과 0000~0000년 기간동안 개원 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한 소속직원에게 그 휴무일 만큼의 유급휴무수당 총 000,000천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김천의료원 자체 「복무규정」에 규정된 개원 기념일 등을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기관경고)

제 목	계약직원 정규직 임용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 증진을 위하여 계약직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Ⅲ-①-가. 공개경쟁시험, Ⅲ-①-다. 채용요건·시험방법 및 Ⅲ-②-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으며,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 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보, 휴직, 복직, 전직, 감봉, 면직, 정직, 직위해제를 명하는 것을 말하고, 임용은 일반직 및 의료직(간호직)의 경우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를 9급으로 임용하는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채용고시, 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아야 하며,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 등 00명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면서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공개 경쟁시험이 아닌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원을 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 법령 및 인사규정과 다르게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김천의료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관리와 예방,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예산이 성립되면 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8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2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에 관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세출 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 및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개원 100주년기념 ○○○○ 등 4건의 행사비 및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면서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를 벗어나거나 세출예산으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하는 등 000,000천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해외여행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해외 의료사업, 해외병원 연수,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논문발표 등의 해외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였다.

의료원 「복무규정」 제53조의2에 따르면 직원이 공무로 해외에 여행코자 할 때에는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Ⅲ. 주요항목별 편성기준 2.경비(7)기타에 따르면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절감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다.

한편 의료원 「여비규정」 제10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직원이 공무로 해외에 여행코자 할 때에는 의료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을 마치고 난 후 여비를 정산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알츠하이머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논문발표 등 0건의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의료원장의 승인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진행하였고, 여행 후 정산을 하지 않는 등 해외여행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시설공사 준공검사 관련
소 관 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김천의료원 ○○○○○에서는 『0000년 김천의료원 ◎◎◎◎◎ 설치사업』을 수행하며 입회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0000.00.00일에 설계도서 등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 검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기관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2 및 제14조(완공검사),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특정기간(2~3년)동안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천의료원 ○○○○에서는 김천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교부사실 확인을 하여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라 완공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했다.

그런데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에서는 0000.00.00. ▲▲▲▲과 계약체결한 『0000년 김천의료원 ◎◎◎◎ 설치사업』의 완료보고서가 0000.00.00. 제출됨에 따라 0000.00.00.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김천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고(0000.00.00. 교부) ▲▲▲▲에서 김천소방서로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아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완공된 것으로 준공검사 하였다.

그 결과 0000.00.00. 준공처리한 소방시설이 준공검사시 발견하지 못한 경미한 공사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하자보수를 진행한지 0개월이 지난 0000.00.00. 공사사업자인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0000.00.00. 김천소방서의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0000.00.00. 김천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를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를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